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68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7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0월 15일 김경영 의원 외 10명
2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3. 상정일자 :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1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경영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된바,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

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7 신설).

- 나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8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치매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후견인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.

#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##### 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①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(안 제3조의7 신설)
- 동 조례안 제3조(업무)에서는 광역치매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본 개정안은 “후견인 후보자 추천”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. (안 제3조제7호)
  - 먼저, 공공후견인은 미성년자, 전과자,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「민법」 제937조<sup>1)</sup>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

1) 「민법」 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 <개정 2016. 12. 20.>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刑期)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서,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을 의미함.

- 또한, 후견인의 역할은 피후견인(치매어르신)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이며,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사무 수행이 가능함.

〈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〉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
- 2)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(침습적 의료행위 제외)
  - 예 : 진료, 검사 등 가능 / 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
- 3) 거소 관련 사무 지원
  - 예 임대차계약 갱신, 보증금 반환, 시설입소(피후견인 원하는 경우) 계약지원 등
- 4)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
- 5)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
  - ※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

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(2021),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

---

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  
[전문개정 2011. 3. 7.]

-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<sup>2)</sup>에서는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명시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의 「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」에서도 광역지원단(광역치매센터)의 수행업무에 매년 치매공공 후견인 모집·선발·위촉·교육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,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임.

---

2)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12. 29.>

1. ~ 7. <중략>
  8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  9.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
 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15. 1. 28.]

## 〈표〉 치매공공후견 사업추진체계

수행기관	수행업무	
보건복지부	사업 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</li> <li>• 예산 지원</li> <li>• 후견인 양성교육 실시('21년 보수교육)</li> </ul>
시·도	광역단위 사업 조정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역치매센터/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</li> <li>• 지방비 확보</li> </ul>
시·군·구 (치매안심센터)	후견대상자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후견대상자 발굴·선정</li> <li>• 후견심판청구</li> <li>• 후견인 활동비 지급</li> <li>• 후견 감독</li> </ul>
광역지원단 (광역치매센터)	후견인 선발·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후견인 모집·선발</u></li> <li>• <u>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 추천</u></li> <li>• <u>후견인 지원 및 인력풀 관리</u></li> <li>• <u>후견인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교육</u></li> <li>•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 (심판청구지원 계획 및 체계를 확립한 시·도 광역지원단만 해당)</li> <li>* 전문인력(변호사, 관계 전문가 등)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심판청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심판청구 업무 지원 가능. 단, 심판청구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사전·사후 보고 및 상호 협의 필수</li> </ul>
중앙지원단 (중앙치매센터)	법률자문 및 후견사무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후견심판 청구지원 및 법률자문</li> <li>• 광역지원단·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</li> <li>• 후견업무 관리·감독 지원</li> </ul>

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(2021),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

②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(안 제3조의8호 신설)

- 본 개정안은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<sup>3)</sup>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임. (안 제3조제8호)
- 이는,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<sup>4)</sup>에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,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도 후견인 양성교육 및 간담회 개최,

3) 「치매관리법」 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2.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,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,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9.19]

4)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12. 29.>

1. ~ 7. <중략>

8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
9.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

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자원에 대한 인력풀 관리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.

- 또한, 보건복지부의 「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」 에서도 광역지원단(광역치매센터)이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추천 요청 시, 광역지원단 소속 공공후견인 중 적절한 자를 필요한 후견인 수의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, 후견인 감독지원에 대한 사항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,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〈후견인 불법 및 비위 등 부적절한 행위  
적발·접수〉

- 치매안심센터로부터 후견인(후보자 포함) 불법·비위 행위 사실을 통지받거나 광역지원단이 직접 적발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
  - (후견활동 중인 후견인) 현재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통지하고, 후견활동 중 발생한 불법·비위 행위인 경우 조사 및 확인 요청
  - (비활동 중인 후견인 후보자) 광역지원단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신고 접수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명백한 불법행위 시 경찰에 신고·고발 조치
- ★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후견인(후보자)은 후견인 명부에서 제외하고, 활동 중인 후견인은 후견인 변경 절차 진행 통해 후견인 변경 할 것

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(2021), 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

## 나.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사업 추진실적

- 치매 공공후견인의 경우, 공개 모집을 통해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과정을 걸쳐 선발하고 있으며, 최근 3년간 선발결과는 다음과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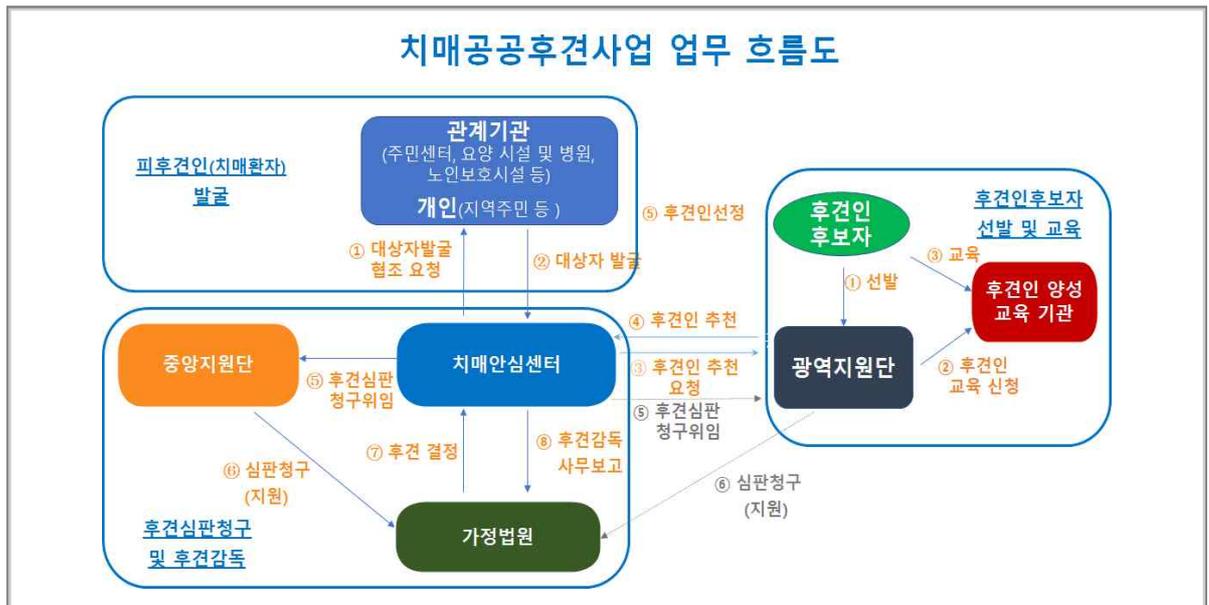
### 〈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결과〉

- 2019년 : 25개 자치구 개별 모집 선발 67명
- 2020년 :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공개 모집 선발 16명(광역지원단 업무개시)
- 2021년 : 서울시광역치매센터 공개 모집 선발 52명  
지정후견 선발 2명 총 54명
- 선발 후견인 중 이사 등 사유로 사임 12명

자료출처 :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제공

- 또한, 치매 공공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(치매환자)의 매칭 방법은 우선,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굴 후(그림 ② 참조) 사례회의 시 후견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, 피후견인으로 선정하고,
- 광역지원단(광역치매센터)에 후견인을 추천 받아(그림 ④ 참조) 치매안심센터가 개별면담과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을 선정, 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 청구를 위임하면(그림 ⑤ 참조) 심판청구가 진행되고,
-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심판결정(그림 ⑦ 참조)을 통보 받게 되면, 2주 후에 후견심판이 확정되어, 치매 공공후견인의 자격과 권한이 생기게 됨.

## 〈그림〉 치매공공후견사업 업무 흐름도



- 2021년 11월 기준으로 광역지원단(광역치매센터)이 치매안심센터 요청으로 후견인 추천을 시행한 건수(그림 ④ 참조)는 총 31건이며, 이 중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추천받은 후견인을 개별면담과 선정회의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정하고, 중앙지원단(중앙치매센터)에 후견심판 청구 위임을 통해 실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가 접수(그림 ⑥ 참조)된 건수는 18건임.

## 〈표〉 최근 3년간 매칭 요청 현황 및 실제 매칭 건수

연도	후견인 추천 건수	실제 매칭 건수 (심판 청구 접수)
2019	20건 (각 치매안심센터 직접 매칭)	20건
2020	21건 (광역지원단 업무 시작)	18건
2021. 11.	31건	18건

자료출처 :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제공

#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후견인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.
- 「치매관리법」은 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음(시행 2021.6.30.).
- 이를 추진근거로, 보건복지부의 「2021 치매정책 사업안내」에서도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공공후견인 모집·선발·위촉·교육 및 후견인 감독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도 관련 업무를 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,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,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경우,  
김생환, 김제리, 김화숙,  
문병훈, 박기재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된바,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7 신설).
- 나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8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8.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 사무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업무)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7.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업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</u></p> <p>8. <u>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</u></p> <p>9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